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,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구청장의 책무”에서 “구의 책무”로 변경(안 제4조)
-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 신설(안 제16조2항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,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민이 온실가스 진단·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경우 에너지 절약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 안 제4조의 책무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구로 개정하여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의 주체와 동일 및 장(章)과 조문제목의 정비로 조례를 체계화하였고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,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이예찬, 양송이
· 신홍식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,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구청장의 책무”에서 “구의 책무”로 변경(안 제4조)
- 나.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 신설(안 제16조2항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맞춤법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에너지법」,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8. 10.~ 8. 14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**효율화**”를 “**합리화**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**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**”을 “**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**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**”을 “**등록한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**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**”를 “**수급권자**”로 한다.

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·책무 등

제4조의 제목 “**(구청장의 책무)**”를 “**(구의 책무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**구청장은**”을 “**구는**”으로, “**효율화**”를 “**합리화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**구청장은**”을 각각 “**구는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**효율화**”를 “**합리화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구민**”을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**”으로, “**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**”을 “**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제품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효율화**”를 “**합리화**”로 한다.

제7조 앞에 “**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위원회설치 및 운**

영”을 삭제한다.

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에너지계획

제7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·운영

제8조의 제목 “(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을 “(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선입한다”를 “선임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에너지위원회 기능)”으로 한다.

제10조 앞에 “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”를 삭제한다.

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

제10조제1항 중 “효율화”를 “합리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개·보수시”를 “개·보수 시”로 한다.

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에너지시책

제12조의 제목 “(공공부문 에너지절약)”을 “(공공부문 에너지시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개보수시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개·보수 시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구입시”를 “구입 시”로, “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14조 앞에 “제4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”을 삭제한다.

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신·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

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

제14조의 제목 “(세제·재정 지원 등)”을 “(세제·재정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효율화”를 각각 “합리화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”을 “(에너지 교육, 홍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효율화, 신재생”을 “합리화, 신·재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에너지관련 교육”을 “에너지 관련 교육”으로, “에너지관련 도서”를 “에너지 관련 도서”로, “에너지관련 홍보문구”를 “에너지 관련 홍보문구”로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·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

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본이념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에너지절약 및 이용 <u>효율화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시민단체”란 에너지 절약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, 조사,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「<u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</u>」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에너지절약전문기업”이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5조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</u></p>	<p>제2조(기본이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합리화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</u>」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등록한</u> -----</p>

관에게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.

5. “에너지빈곤층”이란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·개발·조사·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사업자·구민·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·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

-----.

5. ----- 수
----- 급권자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

권리·책무 등

제4조(구의 책무) ① 구는 -----
----- 합리화-----

-----.

② 구는 -----

-----.

③ 구는 -----

-----.
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-----

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·효율적으로 사용하고,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·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촉진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
실시계획 수립 및 위원회설치 및 운영

<신설>

제7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이

합리화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구민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-----
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제품-----

② -----

합리화-----

<삭제>

제3장 에너지계획

제7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

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(이하 “합리화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.

1.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

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

효율화

<신설>

제10조(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)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·운영

제8조(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-- 선임한다.

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에너지위원회 기능)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5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

합리화

제10조(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) ① -----
----- 합리화-----

-----.

②·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·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12조(공공부문 에너지절약) ①

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,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사용

3·4. (생략)

5.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, 경차 또는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개·보수시

제6장 에너지시책

제12조(공공부문 에너지시책) ①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 개·보수시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3·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구입시
----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-----

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민,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, 신·재생에너지 보급,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
3. (생략)

제16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 ① 구청장은 구민,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·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 관련 교육,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합리화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등) ① -----

--- 합리화, 신·재생 -----

--.

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·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③ ----- 에너지 관련 교육 -----

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관련
도서,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
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, 기
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
있으며, 또한 에너지관련 홍보
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
인 및 교육장소에서 구민에게
배부할 수 있다

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
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의
개발, 이용, 보급 촉진, 온실가
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
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
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에너지 관련
도서-----

----- 에너지 관련 홍보
문구-----

<삭 제>

제17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에너지
절약 및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
에너지의 개발, 이용, 보급 촉
진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
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
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
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
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표창 조례」를 준용한다.